

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
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
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8년 1월 9일
- 회부일자 : 2018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‘항공사업법’ 시행(’17. 3.)에 따라 관련 조례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,
- 사업 유형 및 주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특정한 지원금 교부 방법을 삭제함

4. 주요내용

- 관련 법령 인용 조문 개정 (안 제1조 및 제2조)
 -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 → 항공사업법 제65조
 - 항공법 제2조제31호 →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

- 같은법 제2조제32호부터 제34호까지 → 제2조제9호·제11호 및 제13호

○ 특정 지원금 교부방법 삭제 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위 개정조례안은 ‘항공사업법’ 시행(’17. 3.)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, 사업 유형 및 주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특정한 지원금 교부 방법을 삭제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기존 조례 제7조에서는
 - 충청북도에서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교부할 때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, 공항시설 사용, 국제항공화물운송(동 조례 제3조 1~3호)의 경우에는 충청북도와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가 협의한 사항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결과에 따라 교부하고,
 - 그 밖에 도지사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(동 조례 제3조 제4호)는 사업 착수 또는 교부 결정 시에 교부한다고 규정하였음.
- 개정조례안에서는 사업별로 교부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로부터 재정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위와 같이 지원금 교부 조항을 개정하더라도 충청북도는

조례 제6조에 규정된 운항기록 탑승현황, 운항기록부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지원금 교부를 결정하므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, 타 시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개정조례안과 같은 규정을 두어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. 끝.